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제출일자 : 1996년 8월 20일

회부일자 : 1996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96. 8. 30)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가.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
-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도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파견된 자 등

○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

-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

(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육군5019부대, 1987부대, 공군3579부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체신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영주지방철도청,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청주기상대, 기타 재해관련기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등을 지방에서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자연 재해에 대하여 지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당해 기관 지방창 소속 공무원을 실무반으로 구성하여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락"

5. 토론 요지

- 자연재해 발생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년중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재해기간을 하절기 (6. 15~10. 15)로 명시하여 지방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을 제한하는 것은 하절기 이외의 기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능동적 대처가 지난 하므로 재해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6. 수정안 요지

-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의 조문 중
"재해기간(6. 15~10. 15)에"를 삭제

7. 심사결과

- 본 조례(안) 중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의 조문 중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
기간(6. 15~10. 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를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참석 의원 7인 (만장일치)

8. 소수 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0.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조문대비표